

#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정 토론회

2023. 9. 11.(월) 10:00~11:40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주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양수 국회의원,  
허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 남북 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

주관 | MBC, 강원일보, 전북일보, 매일신문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民官政 토론회

## 행사개요

- 일시 : 2023. 9. 11.(월) 10:00~11:40(100분)
- 장소 :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F)
- 주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김교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양수 국회의원, 허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 납북 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
- 주관 : MBC, 강원일보, 전북일보, 매일신문

## 시간 계획(안)

※ 사회 : MBC 아나운서

시간	주요 내용	비고
09:40~10:00	20' <b>【오프닝】</b> • KBS다큐 “해무” 시청	
10:00~10:30	30' <b>【개회 및 내·외빈 소개】</b> • 인사말씀 김교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양수   국회의원 허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박진오   강원일보사장 최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 위원장 • 기념촬영	
10:30~11:40	70' <b>【토론회】</b> • 좌장 이상훈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 발제 「납북귀환어부의 다중적 피해와 회복방안」 김아람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진행경과 및 과제」 엄경선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 진실규명시민모임 운영위원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 토론 김춘삼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 진실규명시민모임 대표 하광윤   강원민주재단 상임이사 박창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영경   KBS PD	



# CONTENTS

## 인사말씀

---

- 김교흥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이양수 | 국회의원
- 허 영 | 국회의원
- 배준영 | 국회의원
- 김광동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 박진오 | 강원일보사장
- 최 윤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 위원장

## 발제

---

- 납북귀환어부의 다중적 피해와 회복방안 ..... 1  
김아람 |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진행경과 및 과제 ..... 17  
엄경선 |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 진실규명시민모임 운영위원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 39  
최정규 |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 인사말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김교홍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정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울러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이양수 의원님, 허영 의원님, 배준영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광동 진화위원장님,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님, 최윤 남북귀환어부인권침해피해보상특별법 추진위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실은 태양과도 같아서 잠시 가릴 순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두운 과거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6·25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 백령도와 동해안 일대에서 북에 납치됐다 풀려난 우리 어민들에게, 국가가 불법 감금과 끔찍한 가혹행위를 벌인 대한민국 근대사의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귀환한 선원들은 경찰서, 미502수용소, 검찰의 불법 수사를 받은 뒤 국가보안법위반 등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후 가족까지 사법당국의 집중 감시와 사찰을 받으며 수십 년간 간첩이란 낙인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직권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아픈 역사를 되짚는 용기있는 결정을 환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의 진정어린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으로 생존 피해자와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한을 풀고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합니다.

진실규명의 용기는 화해라는 후속 조치까지 이뤄져야 완성됩니다.

저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해 후속조치를 담당하는 기관에 이행의무를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거사정리법을 발의하고 지난 2월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22일 법이 시행되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을 비롯한 진실규명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사과와 권고이행 조치가 따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기간이 내년 5월에 종료됩니다. 1기보다 80%가 증가한 20,092건의 사건이 접수된 가운데 법정 조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조사 활동 보장과 진실규명을 기다리는 피해자와 유족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속히 진화위에서 조사기간을 1년 연장해야 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진화위 활동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야 의원님들과 김광동 진화위원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1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교홍**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 이양수입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정 토론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함께 주최해 주신 김교홍 국회 행안위원장님, 허영 의원님, 배준영 의원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 그리고 행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MBC, 강원일보, 전북일보, 매일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어로작업에 나섰다가 북한에 납북되었던 어부들은 남한으로 돌아온 후 오히려 간첩 혐의로 감금과 고문 등 고초를 겪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이기도 한 강원 지역은 접경지인 탓에 북한에 납북됐다가 귀환한 많은 어업인들에게 수사·정보 기관에 의한 불법 연행과 가혹한 고문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분들은 고문 후유증은 물론, 반공법 등 위반 혐의로 평생 ‘간첩’이라는 낙인 속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후 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뜨거운 열망과 동참이 있었기에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고, 최근에는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와 법원의 무죄판결까지 이뤄지고 있어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납북귀환어부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의 의미가 더욱 무겁고 뜻깊게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의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바라며, 저 또한 피해 어민들이 계신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피해자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제방안들을 마련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1일

국회의원 **미양수**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동해상과 서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의 경비정에 의해 납치당하거나 조업을 마치고 출항 지역으로 귀항하는 도중 안개 등으로 인해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갔다가 북한에서 수일에서부터 수년까지 머문 후, 고향으로 돌아와 합동심문을 받은 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강요당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속되어 벌금 또는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납북귀환어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불법 감시와 사찰 등 인권을 유린당했습니다.

생업을 위해 새벽 미명 무렵 조업을 나갔던 선량한 어부들은 즐지에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채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55년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 진실 결정과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가 이어지고 있고, 납북귀환어부 당사자분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움직임을 통해 재심 무죄 판결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를 필두로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다수의 피해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했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도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큰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관정이 함께 하는 오늘 토론회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을 되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부족하나마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논의의 결과물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김교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이양수 의원님, 배준영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위원장님,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님, 최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1일

국회의원 허영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입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정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동주최로 함께해 주신 김교홍·이양수·허영 의원님과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님, 최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965년 10월 29일 오후 4시경, 제 지역구인 강화군 함박도 근해에서 조개잡이를 하던 어부 100여 명이 북한군 20명의 기습을 받아 피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납북 23일 만에 돌아온 이들은 생경하게도 저마다 색동저고리와 선물 보따리를 들고 판문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만 해도 남한보다 더 잘살던 북한은 이런 식으로 선량한 우리 국민을 납치한 뒤,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위로와 휴식이 아닌, 구금과 가혹행위, 그리고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뒤에도 이들은 당국에 의한 감찰 속에 '창살 없는 옥살이'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피랍어민 가족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 지역구인 강화도 말도에는 65년 피랍사건 이후 서로 다른 두 집을 하나의 지붕으로 연결한 특이한 형태의 집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상호 간의 감시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분단은 북에 대한 경계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국민 개개인의 억울함과 눈물이 국가 보위라는 미명 하에 묵살되고, 방치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국민주권이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바로 선 지금,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재조사와 억울하게 처벌받은 피랍어민에 대한 복권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해 납북귀환어부사건에 대해 재조사가 이뤄지기 시작했고, 건설호·풍성호 등 일부 납북어민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피해자 시민 모임이 결성되었고, 강원도에서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위원회는 서해 납북어민 사건에 대해 국가에 재심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1987년 당시 치안본부(현 경찰청)가 밝힌 납북어선의 수는 459척, 피랍어민은 3,648명에 이릅니다. 아직 수많은 억울한 사연이 수면 아래 놓여있습니다. 남은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재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이 억울한 세월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마련된 오늘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혀진 피랍어민 중 과반인 2,121명의 어민이 서해에서 피랍된 만큼, 서해 접경을 지역구로 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안을 적극 반영해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심도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속하신 직장과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1일

국회의원 **배준영**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김광동입니다.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를 중간 점검하고 향후 조사 및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오늘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양수 의원님, 허영 의원님, 배준영 의원님과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님, 최윤 특별법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2월 8일에 남북귀환어부 관련 인권침해사건 중 건설호와 풍성호 사건에 대하여 첫번째 진실규명결정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위원회는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1965년부터 1977년까지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선원 982명(109척)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현재까지 66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치열한 남북 대결과 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묻혀 있던 사건에 대해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통하여 재심권고한 이후 100명 이상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중 70명 이상이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에서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향후 위원회에서는 납북귀환어부들이 북한에 의해 불법 납북된 후 수개월에서 수년간 북한에 강제역류 되어 인권유린 등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책임과 피해구제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방향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피해자 분들의 명예회복과 궁극적이고 포괄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 인사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한 ‘납북귀환어부 민관정 토론회’를 마련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과 비극을 돌아보고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토론회를 함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교홍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님, 이양수 국회의원님, 허영 국회의원님, 배준영 국회의원님,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님, 최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이상훈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님, 김아람 한림대 사학과 교수님, 엄경선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운영위원님,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된 후 고향으로 돌아와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가혹한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 등이 있었고 일부는 간첩조작사건에 휘말리는 등 피해자들과 가족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입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5년 1기 시절부터 지금 2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피해자의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검찰은 무죄 구형을,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이들의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있는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창간 78주년을 맞은 강원지역 대표언론 강원일보사는 2021년부터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기획보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피해회복을 위한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1일

강원일보사장 **박진노**



지난 50여 년간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못한 이웃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은 억울한 옥살이와 고문 후유증으로, 그 가족들은 연좌제로 인한 불이익으로, 또 그들 모두는 주변의 따돌림으로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속으로 병들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으로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와 그 가족들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 3,648명의 어부들이 북한에 의해 납북되었습니다. 이들이 북한에 의해 납치당할 때 국가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귀순 회유를 뿌리치고 남으로 돌아온 어부들에게 자진 월북과 간첩의 굴레를 씌워 불법 구금과 조사, 고문, 형사처벌의 고통을 겪게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약자들이라 이 사건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론화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본인들과 가족들의 자각과 단결을 통해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선한 시민들과 지역 언론의 노력 끝에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강원민주재단과 진실화해위원회 공동 주최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에 대한 토론회를 계기로 동해안 납북귀환어부피해 진실규명 시민모임이 결성되었고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2022년 진실화해위의 직권조사 결정, 강원도의회 지원조례 의결, 속초시의회, 고성군의회의 지원조례 의결,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합동 추진단 발족, 특별법 제정 촉구 심포지움 등 진실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만이 아니라 경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 전북도의회에서도 지원조례가 의결되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2차 피해를 피해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나서기 시작했고 진실규명 신청과 재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해 民 · 官 · 政이 일심으로 협력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재심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하였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무죄 구형과 선고, 그리고 검사와 판사의 간단한 위로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말 그대로 몇십년 품은 한을 풀고 웃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피해구제의 길은 아직 요원합니다. 재심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피해자 개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돌아가셨고 생존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고통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사과와 보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가가 납북귀환어부들과 그 가족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사죄한다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속한 피해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김교흥 행안위원장님, 이양수 의원님, 허영 의원님, 배준영 의원님께 조속한 법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감사와 함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토론회를 함께 열어주신 김광동 과거사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님,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님 등 여러 언론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9월 11일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 위원장 **최문**



# 납북귀환어부의 다중적 피해와 회복 방안<sup>1)</sup>

김 아 람 |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 
1. 머리말
  2. 납북 전후 어업 현실과 불안정한 생활
  3. 귀환 후 삶의 파괴
    - 1) 국가와 공동체의 감시와 낙인, 그리고 연좌제
    - 2) 폭력과 고통의 전이
  4. 명예 회복과 해원(解冤)의 중요성
  5. 맺음말
- 

## 1. 머리말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은 최근에 연이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2022년 피해자 982명에 대해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고, 진실 규명과 함께 국가에 직권 재심을 권고했다. 대검찰청에서는 2023년에 이르러 관할 검찰에 직권 재심을 청구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재심이 이루어지고, 무죄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법적 판단을 바로 잡는 조치이자 납북귀환어부 당사자와 그 가족의 장기적인 피해를 인정, 배상해야 하는 시발점이 된다.

1960~70년대의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사례를 통해 보면, 정부는 어부들에게 반공법 위반(간첩죄)을 적용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 연행 및 구금, 고문 등이 이루어졌다. 분단 후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여러 간첩 조작 사건이 벌어졌고 많은 피해자가 나왔던 것처럼

---

1) 이 글의 구술 내용은 강원민주재단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으니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납북어부도 조작의 대상이 되었다. 어부들은 어업을 하다가 납치된 피해자였지만 북한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간첩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sup>2)</sup>

이 간첩 혐의로 인한 피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재심 무죄판결 이전까지 납북귀환어부는 범법자였다. 그 가족에게도 2000년대까지 연좌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납북귀환어부와 그 가족을 통해 사건이 지닌 복합적, 장기적인 피해와 그 회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피해를 드러내는 작업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분단과 한국전쟁 후 해상분계선의 문제와 남북 체제 경쟁이 어떠한 문제를 초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상에서 어업을 하던 어부가 납치되었다가 다시 돌려보내진 배경과 관련된다. 둘째, 간첩죄를 조작하고, 사회적 공포를 조장한 한국 정부의 반인권적, 불법적 행태를 살펴봄으로써 국가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시대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셋째, 과거에 벌어진 여러 피해 사건들을 오늘날 어떻게 바로 잡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무엇인지 국가의 책임과 사회적 성찰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아울러 납북귀환어부 피해 가운데에서도 어부 가족의 경험 또한 주목해야 한다. 이는 우선 사건 피해의 범위와 내용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직접적인 당사자로 피해를 국한할 수 있는 사건의 성격을 재고하게 한다. 가족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피해는 고문의 정도나 구금 일자 등 제도적 폭력을 근거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법적, 제도적 배상이 구금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당사자의 피해에만 제한되는 것의 한계를 발견하게 된다. 또 여성 가족들은 중층적인 폭력 속에 놓이기도 하는데, 당시의 환경에서 가정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어진 조건을 수용하고자 애를 썼다. 이러한 여성의 경험은 사적인 한탄에 그치지 않으며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심각한 피해로 발견되어야 한다. 끝으로 어부 생존자가 드문 지금 시점에서 가족의 기억과 말하기는 유일한 기록이자 앞으로를 위한 운동의 원천이 된다. 진상 규명에 나서는 가족들은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남편과 아버지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으며 이어서 스스로의 삶도 재의미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2) 1950년대부터의 조작간첩에 대해서는 김정인, 황병주, 조수룡, 정무용, 홍정완, 홍종욱, 유상수, 이정은, 2020, 『간첩시대-한국 현대사와 조작간첩』, 책과함께를 참조할 수 있고, 납북귀환어부 사례는 이정은, 「누구를 간첩으로 만들었나 4: 납북귀환어부」의 글에서 다루고 있다.

납북귀환어부에 관해서 1기, 2기 진화위의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면서 정부 자료로 파악 가능한 간첩 조작의 지시, 1968년 무장공비 침투 등 안보 위기 상황에서의 변화, 처벌과 이후 지침 등은 대체로 밝혀졌다. 2기 진화위 조사보고에서는 증언을 토대로 가족들의 여러 피해 사실도 기술하였다.<sup>3)</sup>

이렇듯 위원회가 진실 규명 결과를 내기까지 2000년대 초반부터 피해자와 연대했던 인물들을 주목해야 한다. 엄경선은 속초 출신으로 설악신문 기사를 하면서 동해안 지역 피해자이자 이웃 어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왔다.<sup>4)</sup> 그는 지금도 피해자의 거의 모든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변상철은 1기 진화위에서 사건 담당 조사관이었는데, 피해자가 사건을 접수하고 이후 재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기 진화위 활동 이후에도 사건을 계속해서 알려왔고, 최근에도 여러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다.<sup>5)</sup>

이 글은 앞선 기록들을 참고하되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합동추진단’에서 진행한 피해자 구술을 토대로 한다. 추진단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25명의 납북귀환어부 생존자와 유가족의 구술을 진행했다. 구술자들은 각각 1시간 30분 이상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했고, 이를 통해 여러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이어진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 2. 납북 전후 어업 현실과 불안정한 생활

한국전쟁 정전협정(1953.7.27)에서는 육지의 군사분계선 설정과 달리 해상분계선 설정이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 유엔군도 해상분계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유엔군은 정전 당시에 한반도 주변 해역의 제해권을 전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해상분계선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sup>6)</sup>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건설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2022; 「납북 귀환어부(故 최○옥) 가족 인권침해 사건」, 「납북귀환어부 송○근 반공법 위반 사건」, 「창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명천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2023, [https://www.jinsil.go.kr/fnt/nac/selectNoticeList.do?bbsld=BBSMSTR\\_000000000716](https://www.jinsil.go.kr/fnt/nac/selectNoticeList.do?bbsld=BBSMSTR_000000000716).

4) 엄경선, 2008, 『동해안 납북어부의 삶과 진실』, 설악신문사와 이후 『설악신문』 연재 기사들.

5) 변상철, 「납북귀환어부 이야기」, 『오마이뉴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연재.

6) 한국전쟁에서의 남북 군사분계선, 해상분계선 설정에 관해서는 김보영, 2016, 『전쟁과 휴전-휴전회담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한양대학교출판부 참조.

전쟁이 끝난 후 한국 정부는 어로저지선을 설정했고 이후 잦은 변경이 있었다. 1950년대부터 어로저지선의 변경이 있었지만 1968년은 중요한 변동이 있던 때이다. 1967년 1월에 어로저지선을 경비하던 남한 해군함정이 북한의 포격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듬해인 1968년은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었다. 1월 21일에 김신조 등 간첩단이 침투했고, 25에는 미국 해군 첩보함 푸에블로호가 납북되었다. 11월 2일에는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사건이 발생했다. 위기가 가시화되자 한국 정부는 11월에 ‘어로한계선 변경조치’를 실시했다. 동해안이 먼저 5마일을 남하시키고, 1969년에 서해안도 조정했다.<sup>7)</sup>

문제는 어로한계선 위반에 대한 처벌 조치였다. 어로한계선 위반에는 수산업법이 적용되고 있었지만 1968년 11월 24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조업 중 두 번 이상 납북되었다가 송환된 어부에 대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하라는 초강경 방침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탈출죄·잠입죄와 형법의 간첩죄·간첩미수죄를 적용, 기소하며 유기형을 구형할 때는 자격정지형을 병과 구형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 무조건 상소하라고 했다.<sup>8)</sup>

정부의 이러한 처벌 방침은 납북귀환어부 피해 사건의 출발점이었다. 어부와 어업의 현실과 처벌 조치는 큰 괴리가 있었다. 우선, 현실적으로 당시의 해양 기술과 조업 기술의 한계로 해상에서 어로한계선을 알기는 어렵다. 어부들이 어업한계선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볼 수도 없다. 정부는 어량을 따라 이동한 어부들의 ‘월선’에 미필적 고의를 적용했지만 월선과 월북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또 어부들이 해군 경비 등으로 대략의 어로한계선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업 활동에서 한계선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1967년 1월 포격 사건 당시에도 어로저지선 위쪽으로 넘어가 있는 어선은 200여 척에 달했다.<sup>9)</sup> 게다가 1968년 한계선이 조정되고 초강경 처벌 조치가 적용되는 사실도 어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졌는지 불분명하다. 게다가 어로저지선 월선이 아니었다고 해도 납북되었다가 돌아오면 조사와 처벌을 받았다.<sup>10)</sup>

7) 「사설-어로한계선 변경과 해안경비 강화」, 『경향신문』 1968.11.26.

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7,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19쪽; 「두 번 이상 납북어부 사형 구형토록」, 『동아일보』 1968.11.24.(이정은, 앞의 글, 316쪽에서 재인용).

9) 「동해상 전함에 ‘전투비상」, 『조선일보』 1967.1.21.

1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2, 「건설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2022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2권』, 213~214쪽.

한편, 납북 상황은 정부의 경계 경비 책임이 있다. 해군과 경찰이 해상 경계선 경비를 철저히 하지 못할 수도 있었고, 북한과의 군사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대응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들의 구술 중에서는 북방 경계선 안에서 납치가 될 때에도 군경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나포 상황을 지켜보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부들에게 고의적 월북과 간첩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한다는 일방적인 대검찰청의 지시가 내려졌던 것이다. 어부들이 ‘납치’되는 피해가 ‘탈출’, ‘잠입’으로 전환되었고, 어로한계선 남하로 인한 어부들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축소되었다. 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어부들은 ‘탈출’과 ‘잠입’에 고의성, 목적성을 찾기가 어렵다. 설령 ‘월선’을 했다 하더라도 납북이 피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북한에서는 1968년 전후로 간첩 침투 시도를 늘리고 있었고, 1960년대 전반보다 억류 기간도 늘렸다. 어부들은 어로한계선 조정 후에도 기존의 영역에서 해오던 방식대로 조업을 하고 있다가 북한에 납치가 되었지만, 정부는 모든 책임을 어부들에게 지우고, 처벌만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어부와 가족들은 납치부터 그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졌다.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남편이나 아버지가 갑자기 납북이 되었을 때, 가족들은 어디로 갔는지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I는 남편이 1967년 3월에 납북되었으므로 북한에 납치되었으리라는 예상을 하기 어려웠다. 가족들은 배의 선장이나 선주를 찾아가서 정보를 얻을까 하지만, 그 가족들 역시 배의 행방을 알 수는 없었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안 속에서 어머니나 아내는 점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았다. I가 여러 점집에 가보았을 때 대부분 남편이 사망했다고 했다. 그는 아들과 함께 구술을 하다가 아들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던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점쟁이가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막 울고불고” 덩달아 그도 함께 울었던 일이 있었다. 어떤 점쟁이는 배가 일본에 갔다가 “파산이 돼서 딱 깨져가지고 물속에서 다 고기밥이 되고 말았다”고도 했다. I의 시어머니도 “100군데 점을 봤”는데 다 죽었다고 했다. 단 “한 군데서 무당이 방울을 흔들면서 방울을 자꾸 뒤로 던”졌더라는 것이다. 북에 갔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들(남편)이 “북한에 갔다는 걸 믿지를 았았”고 “죽었다고 생각”했다.

E는 중학교 1학년 때인 1968년 1월에 아버지가 납북되었다. 젓먹이 동생이 있던 때였는데, I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납북되었던 것은 몰랐다. 그의 어머니도 점을 보러 다녔다. 5남매를 돌보던 어머니는 아버지의 납북 후 충격으로 “너무 많이 아프셨”다. “엄청 고생을 많이 하며” 살다가 “무릎도 못 쓰고 수년을 기어 다니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돌보기가 쉽지 않았다. I는 아기들을 친정에 맡겨두어서 딸 한 명은 “젓도 제대로 못 얻어” 먹었다. 딸이 태어난 지 20일이 안 되어 남편이 납북되어 당시에는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아버지가 없어졌는데 뭐 너, 너쯤이야”하는 생각이 있었다. 이때 딸의 출생은 환영받기는커녕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딸이 태어났을 때 강 “네가 재수가 없다. 네가 재수가 있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됐겠냐”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고, I도 그 생각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 그 뒤 아버지가 돌아오고 나서는 딸에게 “네가 재수가 있다”고 반전이 일어났다. 제대로 양육 받지 못했던 아기는 아버지의 행방에 따라 ‘재수가 있거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납북되었던 어부는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연행되었다. 동해안에서는 1969년에 강원도경찰청이 합동심문반을 구성하여 귀환어부를 분산 수용했고, 가족 등의 면회를 일체 금지하였다. 합동심문반은 지방경찰서에서 차출한 합동심문요원, 치안국 심문반, 군 및 중앙정보부 수사관으로 구성했고, 단계별 심문계획에 따라 ‘간첩 색출 및 공작여건 개척’을 목표로 심문했다. 강원도경찰국은 간첩을 색출하는 심문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라고 지시했다. 합동심문이 끝나면 선적지 관할 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되어 2차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다. 1968년 11월에 납북되었던 건설호의 피해자들은 몇 개월 동안 귀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구금된 피해자들은 전기고문, 물고문과 각종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sup>11)</sup>

납북되었다가 돌아와서 구금 등 피해를 입은 어부의 모습은 납북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다. F의 남편은 1972년에 3주 가량 억류되었다가 돌아왔고, 남한에서 끌려가서 “한 달 만인가 나왔”을 때는 “이빨도 빠지고, 얼굴도 초췌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말하지 말라고” 했고 “경찰이 늘 따라댕겼”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무서워 가지고 바깥을 못 나가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F는 가기 전과 비교하면 “신랑이 완전히 바보 멍충이가 됐”다고 했다. 경제 활동도 당연히 할 수 없었고, 가계 생활은 그녀의 몫이었다. E의 아버지도 “당하고 온” 뒤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어머니가 노가리 건조 등의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다. E도 어머니를 도와 겨울에 “손이 푹푹 얼었”지만 덕장에 노가리를 널었다.

11) 강원도지방경찰청 보안과, 1969, 「단계별 심문계획」, 『남북귀환어부』; 강원도경찰국, 「귀환어부 심문 철저 지시」, 1969.5.3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2, 앞의 보고서, 208~212쪽에서 재인용).

아버지의 납북귀환 후 자녀들 역시 생계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교육받기가 어려웠다. A는 여섯 살 때인 1968년 11월에 아버지가 납북되었다가 7개월여 만에 돌아왔다. 기관장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고문과 구타를 많이 받아서 다리를 절었고, 낙인으로 인해 다시 배를 탈 수 없었다. A는 중학교 2학년까지 공부한 자신이 언니들에 비해 고생을 안했다고 하면서 한 언니는 “국민학교 나와서 식모살이하고, 학교 선생님 애들 낳으면 그 애기 봐주고 밥 얻어먹고” 살았다고 한다.

정부는 납북어부에게 어로저지선, 북방한계선 위반을 근거로 1968년 안보 위기 이후에는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며 귀환 즉시 어부들을 연행, 구금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고문 등 가혹행위를 벌였다. 어부가 북한에 나포, 억류되었다가 귀환하여 구금 생활을 하는 동안 가족들은 막연히 가장을 기다리며 무속신앙에 의지하기도 했고, 돌아온 남편/아버지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아내와 자녀들은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납북귀환어부와 가족들의 삶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 3. 귀환 후 삶의 파괴

#### 1) 국가와 공동체의 감시와 낙인, 그리고 연좌제

형사처벌이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진 후, 어부들은 석방된 후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교육’을 받았다. 납북귀환어부평가심사위원회가 ‘위해도’에 따라 납북귀환어부를 세 개 등급으로 구분했고, 1980년대에 들어서 국가안전기획부도 A급 월 2회, B급 월 1회 소재지 및 동향 파악을, C급은 간접동향 수집을 하고, 귀가 후 연 1회 특별소집 및 반공교육을 실시했다. 1980년대 초반에도 대검찰청에서는 납북귀환어선의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을 형사 입건해서 처벌할 때, 3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고, 구형에 맞는 판결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하라고 검찰에 지시하고 있었다.<sup>12)</sup>

1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2, 앞의 보고서, 216쪽.

납북귀환어부의 가족도 감시와 사찰의 대상이었다. 주소지 소재 각급 경찰서에서는 귀환 당시 수사 담당 검찰청에 가족 실태조사를 보고했다. 실태조사에는 가족사항, 생활수준, 생계유지방법 등이 기재되었고, 선원별로도 등급을 나누고 있었다. 보안사에서는 납북귀환어부 명단을 하급기관에 보내어 사찰에 참고하도록 했다. 건설호의 어부들의 내사결과 보고서에는 귀환후 보고 시점까지의 특이 동향, 장기 출타 사항, 재산증감 사항, 접촉 인물 등을 기재했다.<sup>13)</sup>

‘실태조사’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적인 공간도 침해받는 것이었고, 어부 당사자는 신고의 불편과 감시에 대한 불안으로 가까운 외출도 꺼리게 만들었다. 또 1980년대까지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사찰이 계속되고 있었다. A와 어머니는 “집을 지키는 남자들”을 의식하고 살았다. 그의 아버지는 51세에 납북되었다가 돌아와서 70이 다 돼가는데도 감시를 받았다. A는 감시하는 경찰한테 “아니, 나이가 칠십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따라다니냐, 지금도 찾아다니시냐”고 외출했을 때는 “내가 여기에 왔는 걸 당신들 어떻게 아냐”고 물었다. 경찰은 “웃으며 다 안다”고 했다. D의 아버지는, 아들이 서울에서 대통령배 축구경기 결승전에 나갔지만 신고해야 하는 게 싫어서 가지 않았다.

가족에게 피해가 미칠 것을 우려한 납북귀환어부는 가급적 납북과 귀환 후 피해를 알리지 않으려고 했다. 특히 결혼 전에 사건이 벌어졌던 경우,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 G는 아들이 세 살이 되었을 때 알게 되었는데, 이 또한 이웃과 다툼이 있어서 경찰서를 갔을 때 경찰이 말을 해줘서 납북 사실을 알았다. L은 1971년에 납북되었다가 1년여 만에 돌아왔다. 그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한 2022년까지 아내와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 중에는 1980년대에 다시 간첩으로 몰려서 연행,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릴 수밖에 없었다. D는 아버지가 “누구 다른 사람한테도 절대로 아버지 갔다 온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했다. “갔다 오신 분 중에 다른 사람이 또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서였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 모임 대표인 김춘삼도 1983년에 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다. 2013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 외에도 1980년대에 납북귀환어부를

13) 강릉경찰서, 「납북귀환어부 등 가족 실태 조사보고(강정 2061-4839)」, 1977.5.18.의 조사보고에는 1964년부터 1977년 4월 30일까지 141명분의 납북현황 및 납북귀환어부 가족실태조사부 등이 첨부되어 있다고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보고서, 216~217쪽.

간첩으로 몰아서 다시 복역하게 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고, 그 건에 대해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재심이 있었다.<sup>14)</sup>

추후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지만, 1980년대에 마을 안에서 간첩 신고를 독려하자 이웃 사이에도 정보원 역할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K는 할아버지가 납북귀환어부였는데, 할아버지의 지인 중 “정보원 노릇을 하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강요받아서 견디지 못해 정신 이상 증세가 온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가가 경찰을 동원하여 납북귀환어부와 가족을 감시, 사찰하자 이웃에서의 낙인도 피할 수 없었다. I는 “대놓고는 못하지만 ‘저 집이 이북 갔다 왔어. 저 집이 고기 잡으러 이북 갔다가 이북 들어갔다 왔어.’ 그렇게 찍혀서 살았”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서 동네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며 나아지기도 했지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아내에게 평생을 말하지 못했던 L은 의식적으로 마을에 봉사를 많이 해왔고, 신망이 높아졌다. 그의 집에는 여러 관공서로부터 받은 표창장도 많았다.

한편, 납북귀환어부의 가족과 친척에게는 2000년대 초반까지 연좌제가 적용되었다. 연좌제는 전근대 사회에서의 법적 처분으로 생각되지만, 한국에서는 분단 상황에서 가족이 북한에 갔거나(납북, 월북) 납북귀환어부처럼 반공법, 국가보안법 처벌을 받은 후에도 제약이 많았다. 현재도 신원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 군경 등 취업에 제한을 두기도 하지만,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에게는 8촌에 이르기까지 여러 직종에 진입하지 못하게 했다. H는 아버지의 납북귀환 사실 때문에 경찰 면접시험에서 탈락했다. H의 사촌도 ROTC에 갈 수 없었다.

연좌제는 어부들에게 불안과 죄책감을 가지게 했고, 자신의 피해보다도 더 괴로울 때가 있었다. K의 할아버지는 “연좌제 때문에 뭘 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식들이 알게 될까 봐 그거를 제일 무서워하시고 걱정”했다고 한다. 당시에 주변에서는 “좀 똑똑”했지만 가족의 “납북 이력 때문에 못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사람이 좌절하게 되”는 걸 보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아예 좌절의 가능성조차 두지 않으려고 아들을 고등학교에 진학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14) 변상철, 「납북귀환어부의 국가폭력 피해와 현황, 전망」, 강원민주재단, 강원일보사, 『「감춰진 진실-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 포럼 자료집」, 2021.11.26.

남북귀환어부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에게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다. 당시에 ‘간첩’ 혐의는 사회적인 공포를 야기하기에 충분했다. 결혼 상태에서 아내에게조차 피해를 숨기기도 했고, 결혼 전에 사건이 있었다면 결혼 후 굳이 말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텐데 ‘범법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괴로웠던 경험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 구술 사례에서 처럼 ‘자신으로 인해’ 가족에게 또 다른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는데, 피해 가족들에게는 실제로 일상적으로 감시가 있었고 국가의 통제를 실감하며 살았다. 연좌제는 가족들의 군대, 취업 등을 제한하였고, 이후 삶까지 규정하는 막심한 해를 끼쳤다.

## 2) 폭력과 고통의 전이

남북어부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은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전이되었다. 자신의 피해를 말하지 않았던 G의 남편은 다툼이 있을 때도 “자꾸 말을 하자”고 했다. G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뭐가 불만인지 말을 하라”고 하지만, 남편은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녀는 지나서 회고하기를 아마도 남편이 가슴 속에서 “애통이 터지는 거”였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붙잡혀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G가 남편의 피해를 알고 난 뒤에는 남편이 “이렇게 살 바에는 이북에 있었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라며 한탄을 했다. 남편의 동생은 남북되었다가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는데, 남편이 남북되었을 때 동생을 만났다고 들었다.

남북귀환어부의 실질적인 고통은 북한에서보다 남한에서 더 컸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물리적인 피해를 겪지는 않았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기간에는 통제된 상태에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긴 상황이 물론 편안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북한에서의 억류 생활 중에 고문이나 구타는 없었다.

남한에서 처벌을 받고 돌아온 피해자들은 대체로 술에 의지할 때가 많았다. G의 남편도 술을 자주 마셨고, 부부싸움이 이어질 때가 많았다. B의 아버지도 “항상 쫓기는 것 같고, 두려워하고, 밖에 나오는 걸 겁나”했다.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항상 어두운 데 있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아버지와 함께 밖에서 시간을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복역 후 돌아온 “이후부터 술을 엄청” 먹기도 해서 “하루에 (소주) 서너 병은 기본”이었다. D의 아버지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술을 마셔서 응급실에도 꽤 갔다. 그녀는 아버지가 “간이나 위가 다 혈을 정도로” 음주를 하는

“거의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추측했다.

J의 아버지는 그녀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납북되었다가 돌아왔고, 5학년인 1968년에 다시 납북귀환했다. 그의 아버지는 납북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월북했다는 누명을 쓰고 구타와 고문을 심하게 당한 후 실형을 살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고문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아버지가 직접 피해 사실을 말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출소 후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자주 각혈을 하며 자다가도 헛소리를 할 정도로 몸이 망가져 있었다.<sup>15)</sup> “밥을 하면 그 위의 미음을 떠가지고” 아버지 입에 넣어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 J는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아프나”하는 원망의 마음도 있었다고 기억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다툼도 잦았는데 아버지가 “엄마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하며 싸우고, “뭐 죽으라 그러”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아버지는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일체 말을 안”했다. 일을 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의지하던 아버지는 “가족이 시련을 당하고 힘들어하니까 너무 너무 힘들어” 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는지” 몰랐다. 그녀는 지금에 와서 아버지의 고통을 떠올리면 오히려 “가족이랑 안 살고, 차라리 교도소에서 그냥 살았다면 더 힘든 고통을 안 당하시지 않았을까, 우리들하고 있으면서 더 많이 힘들어” 했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남편이나 아버지의 피해는 고통은 본인을 괴롭힐 뿐만아니라 가족에게는 폭력으로 나타났다. D는 아버지가 “고문 후유증으로 대인기피증이 있었다”고 회고하며 아버지가 전과 달리 “난폭해”졌다고 했다. 아버지의 불안과 변화한 성격에 어머니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외출했다가 예정한 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불안해했고, 어머니는 “많이 희생”하는 모습이었다.

자녀들을 향한 폭력도 있었다. B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원망을 풀었다고 했지만 구술을 하면서 복잡한 심경으로 울음이 계속되었다.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그에게 잊히지 않았다. “아버지가 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기에 있을 때 맞은 거에 비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때렸던 일화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폭력적 경험이 자녀들에게도 재현되며 가족관계는 어그러졌고, 자녀의 청소년 시절은 방황으로 지나갔다.

15) J, 「진실규명신청서」, 진실화해위원회 접수, 2021.12.7.

남북귀환 피해자였던 아버지를 회고하는 자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당시에는 아버지의 고통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여러 피해 사실들을 알게 되며 과거를 돌아보고 아버지를 깊이 공감해 가는 과정을 겪고 있었다. 극심한 폭력을 겪은 피해자에게 남은 상처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폭력으로 재생산되거나 다른 성격의 장기적인 아픔과 원망을 남기게 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 규명에 나선 가족들은 남편과 아버지의 지난 삶의 의미, 명예를 회복하고, 스스로의 삶 또한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 4. 명예 회복과 해원(解冤)의 중요성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한국전쟁의 피해, 국가로부터의 폭력과 인권침해 등 한국 현대사의 중대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명예 회복’에서의 ‘명예’는 사전적 정의와는 크게 다르다.<sup>16)</sup> 피해자가 이름이나 권위를 높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남북귀환어부에게는 부당하게 지워진 ‘간첩’, ‘범법자’, ‘빨갱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피해 이전의 평범했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숨겨지거나 조작되고, 피해자 스스로도 숨겨왔던 피해 사실을 밝히는, 첫걸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귀환어부의 피해자 일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직접 과거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국가기관(진화위)은 사회 변화와 피해자의 용기에 조용하며 ‘진실 규명’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2022년 2월에 2기 진화위가 처음으로 남북귀환어부 피해 사건의 직권조사 결정한 후 강원도 민관합동추진단이 만들어졌고, 조사가 결정된 사건 외에도 많은 피해 사건과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2기 진화위에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주로 했다. 2021년 말에 피해자들의 시민모임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동해안의 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 등 지자체에도 협력을 요청하며 다른 피해자들도 진실 규명에 함께 하게 되었다.

16) 사전적 정의는 1.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 2. 어떤 사람의 공로나 권위를 높이 기리어 특별히 수여하는 칭호이다. 『표준국어대사전』.

하지만 피해자가 진화위나 추진단에 접속하기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납북귀환어부인 C는 도로에 붙어 있던 플래카드에도 처음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자기 가족의 이야기라는 것도 잘 몰랐다고 한다. “아버지가 절대로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된다”고 한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두렵기도 했다. 그러다가 진화위의 연락을 받았고, “서울에서 왔고, (플래카드) 붙은 거 봐서 얘기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납북귀환어부가 3천 명 이상이었고, 가족들이 수천 명에 달하지만, 그에 비하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는 피해자는 매우 소수이다. 이들은 추진단의 이 구술에도 응했고, 그 후 국회에서 열린 포럼이나 다른 피해자의 재판에도 함께 참여한다. 이러한 활동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과거에 부정적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 당시 상황을 이해하게 되어 원망보다 측은함과 안타까움, 미안함이 커졌다. C는 아버지가 “좋은 세상 한 번 못 보”았다며 “이북만 안 갔더라도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과 형제들의 불우했던 생활도 달랐을지 모른다는 회한이 있었다. J는 아버지가 아프신 “외출도 안 하시고 돈도 안 벌”고 어린 오빠가 배를 탔던 때에 “‘왜 아버지는 저렇게 돈을 안 벌으실까?’ 아버지를 너무 너무 많이 원망”했다고 한다. 자신도 “이까(오징어) 다리아를 나르고, 리어카를 밀”어야 했던 사춘기에 죽으려고도 했었다. 그러다가 지금은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얘기를 해줬으면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D는 형제들이 아버지가 난폭했던 것만 기억하고 있자, 최근에 자신이 사건을 알고 나서 형제들에게 공유했다. “이제서야 형제들도 아버지가 왜 그랬나를 이해를 하”게 되었다.

(생존 피해자를 만나니) 어머! 세상에 하나같이도 울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때 처음 가가지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문을 받고 그렇게 그런지도 몰랐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엉엉대고 울었어, 나는 아주, 너무 많이 울은 거야. … 뽀뽀도 해주고, ‘사랑한다’ 한마디도 그런 걸 못 해주고, 이렇게 한 번 아버지 손도 따뜻하게(못해주고),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어. 나는 너무 나를 고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원망도 했어. 대놓고는 말을 못했지만, ‘아버지 너무 미안해요.’ 근데 혼자서 이제 아버지랑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 J

피해자의 활동은 ‘피해자’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 자녀들은 피해자 모임이나 지원단체를 접하고, 기록을 통해서 아버지가 겪었던 일이 심각한 피해였음을 깨달았다. 피해 사실도 다른 생존 피해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E는 “이번(피해자 모임)에 (북한에)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고문도 많이 당하고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까지는 사건을 감추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았지만 피해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가해자를 향해 요구도 하는 용기가 생겼다. E도 “여러 사람이 모이고, 위원회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이제는 뭐 떳떳하게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피해자는 과거 국가의 잘못을 바로 잡고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역사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운동을 행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으며 해결을 위한 지난한 과정에도 인내를 가지고 활동에 임한다. B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독립되고 나서 남북이 흩어졌지만 그다음에는, 국민을 책임져서 지킬,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자기네 성향에 안 맞는다고 반공으로 몰아가고” 가족들까지 “개인의 인격을 본 게 아니고 물건으로” 보았다고 했다. “필요하면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세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 사람을 물건으로 보았던 국가가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K도 “가해자가 직접 사과를 하면 그게 아마 피해자들한테는 제일 큰 위안이 될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가해자는 추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국가를 대리하며 실제로 구타, 고문을 자행하거나 법적 조치를 했던 검사, 판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무죄판결 못지않게 가해 주체의 사과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더라도 피해자가 실질적인 배·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잘못된 사법 판단은 피해자에게 다시 번거로운 재판 절차를 감당하게 하고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만드는 사회적 악이다. 왜 수십 년 동안 피해를 겪었는데도 피해자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다짐으로 “앞어질 때”가 있어도 “다시 시작”(D)하자는 의지를 다져야 하는지 국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가 개별적인 배상 청구 절차를 하지 않고, 중앙 정부나 지자체 등 여러 단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려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별법은 특별한 대우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복할 수 없는 과거의 사법적 만행에 대처하여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임이 사회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겠다.

## 5. 맺음말

2023년 6월 28일에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그 취지문에서 “남북귀환어부들을 간첩으로 내몰고 탄압한 국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와 피해 회복 절차

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줘야 할 의무”를 짚고 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구제를 신속히 하는 위원회 설치, 직권 재심 청구 권고, 사건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 보상금 지급, 피해자 및 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sup>17)</sup>

납북귀환어부의 피해는 한국전쟁 후 남북의 대립에 연원을 두고 있다. 남한은 정전협정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해상분계선을 어업과 어부에게 적용하고, 북한은 어부들을 체제 선전에 활용하려고 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인 어부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고 폭력을 자행했다. 또한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다. 어부들의 피해는 가족의 피해이기도 했다. 수십 년 동안의 감시와 사찰, 연좌제는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다. 낙인과 연좌제로 인해 친척, 마을 이웃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가족, 특히 여성 피해자들은 생계를 꾸려야 하고 가장과의 갈등과 가정 폭력도 감내해 왔다. 피해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망과 불안 속에 살았지만, 회복을 위해 다시 애를 쓰고 있다.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향한 피해자의 운동에 대해 국가는 과오를 사과하고, 실질적이고 빠른 배·보상으로 응답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현실적, 법적 조치가 바로 특별법 제정이다.

---

17)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가칭) 추진위원회 출범 취지문」, 2023.6.28.

MEMO ●●●

##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진행 경과와 과제

엄 경 선 |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 진실규명시민모임 운영위원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民官政 토론회

#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진행 경과와 과제

엄 경 선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 전후 납북어부는 얼마나 되나?

구분	계	어부	KAL기	군경	기타		
					국내	해외	
피납자	3,835	3,729	50	30	6	20	
귀환자	송환자	3,310	3,263	39	-	-	8
	탈북귀환자	9	9				
억류자	516	457	11	30	6	12	

\* 통일부 홈페이지 자료  
어부 피납자 1992년까지 집계한 통계로 확인 (1987년 치안본부 작성 자료와 차이)

- 전후 어선 피납 납북사건은 1955년부터 발생.
- 동해안의 경우 피납자는 1천6백명 이상으로 추정. 1957년 11월 9일 거진항 덕길호 등 8척(47명) 피납을 시작으로 1967, 1968년에 최고조. 다시 1971년, 1972년 2년간 집중 납북사건 발생
- 동해안에서는 1980년 남진호, 1982년 마산호 피납이 마지막 납북사건. 서해안은 1990년대까지도 납북 사건 발생.
- 납북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은 피해자 1,300여명 추정 /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귀환어부 3,263명** 모두 피해자로 봐야 함. (월선조업 반공법 처벌 피해자도 있음)

## 납북귀환어부 인권탄압은 국가폭력 범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은 군사 안보의 논리로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고 탄압한 대표적인 국가폭력 범죄로 가해자인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거사임.

- 국가의 죄책 1 - 국민을 북의 도발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납북의 책임을 어민들에게 떠넘긴 죄.
  - 납북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은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지 못한 '취약한 국방력'에 있음.
  -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납치지점을 조작해 의도적으로 어민들에게 책임 전가.
- 국가의 죄책 2 - 범죄 피해자인 귀환어부를 오히려 체제를 위협하는 간첩으로 내몬 죄.
  - 북한의 납치로 억류되어 피해를 입고 돌아온 어부를 지령을 받고 침투한 간첩으로 조작하려고 갖은 구타와 고문으로 정신과 육체를 모두 망가뜨린 반인권적인 국가폭력 범죄.
- 국가의 죄책 3 - 불법감시사찰과 위헌적인 연좌제, 간첩조작으로 국민 인권을 탄압한 죄.
  - 처벌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납북귀환어부를 대상으로 불법으로 감시하고 사찰.
  - 어선승선금지, 신원조회 등으로 취업제한이라는 이중처벌, 봉건적인 악법으로 헌법 13조에 금지된 연좌제 실시
  - 추가 간첩조작사건 등 피해.
  - 사회적 낙인찍기 여론 조성.

\* 1969년 9월 현직 검사가 밝힌 「납북어부의 죄책」에 대응해 「국가의 죄책」을 정리함.

## 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 시작

- 2006년 12월 서해안 태영호 납북사건 진실규명 결정.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기관 최초의 진실 결정.
  - 1968년 7월 3일 연평도 근해에서 태영호와 어부 8명 납북, 4개월 억류 후 귀환. 검찰 불기소 처분 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나포 어선이 공비 침투로 제공 등에 이용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해 검찰이 다음해인 1969년 4월 기소, 징역 1년~1년6개월 집행유예 실형 선고.
  - 2006년 3월 강대광 등 5명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 12월 진실결정.
  - 2007년 재심 청구, 2008년 7월 재심 무죄 선고.
  - 2017년 9월 검찰 고 박종옥 직권 재심 청구, 12월 무죄 선고
- 2007년 진실화해위,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정삼근, 서창덕(승룡호)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 결정.

## 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 시작

- 1기 진실화해위원회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신청) 진실규명결정 (10건)

태영호 납북사건 (2006. 12. 5)	강대광 간첩조작 의혹사건 (2007. 6. 19)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사건 (2007. 9. 18)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사건 (2007. 11. 27)
백남욱 간첩조작 의혹사건 (2008. 6. 3)	임봉택, 박춘환 등 반공법위반 사건 (2009. 4. 20)
정영 간첩조작 의혹사건(2009. 5. 18)	이상철 간첩조작 의혹사건(2010. 1. 12)
최만춘 간첩조작 의혹사건(2010. 1. 19)	임종덕 간첩조작 의혹사건(2010. 3. 23)

- 1기 진실화해위원회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직권조사) 진실규명결정 (7건)

납북귀환어부 이병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김이남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김영일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이성국, 강경하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김성학, 이청일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박월림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윤질규 간첩조작 의혹 사건	

## 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 시작

- 1기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3월 납북귀환어부피해 기초사실조사 실시 (대상인원 1,028명)
- 기초조사 보고서 발행과 사후조치도 없이 1기 진실화해위 활동 종료.



2009년 속초시청에서 열린 기초사실조사 조사원교육 장면

## 남북귀환어부 진실규명 시작

- 2007년 4월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10월 시행.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활동
  - 3년 이상 억류된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 피해위로금(최대 2천7백만원) 지원
  - 탈북납북자 정착금 지급
  - 귀환어부 국가공권력 피해 구제 거의 없음 (보상금 지급 단 1건)
  -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과 인권유린 진실규명은 이뤄지지 않음.
  - 납북피해자 지원 및 보상을 처음 시행에 의의.
-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 현황

(단위:건/원)

구분	신청	지급결정	지급액
피해위로금	428건	416건	129억 1,457만원
정착금·주거지원금	9건	9건	17억 7,361만원
보상금	13건	1건	6,761만원
계	450건	426건	147억 5,579만원

• 출처:2015 통일백서

## 남북귀환어부 진실규명 시작

- 2009. 7. 국민권익위원회 속초 고성 지역 납북피해자와 가족 대상 69명 설문 조사 실시 (속초경실련 지원)
- 2009. 8. 13. 국민권익위원회 납북피해자 권익 보호증진 토론회 개최
- 2009. 9. 23. 국민권익위원회 “3년 미만의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포함” 등 개선방안을 통일부 등에 권고. (반영안됨)

## 남북귀환어부 진실규명 시작 - 속초 고성

- 2007년 6, 7월 설악신문 연재기획 / 냉전이 빛은 최악의 굴레, 남북어부 1~6

기획 | 주간설악신문 | Planning News | 2007년 6월 4일~6월 10일 | 14 |

설악권의 분단과 냉전의 기억 4

냉전이 빛은 최악의 굴레, 남북어부①

### 가족 먹여살리려 배탸다가 고통과 굴레만 남겨

남북 긴장 최고조였던 67~68년 최대규모... '돌아오지 않는 어부' 2005년 12월말 현재 485명



남북 255 일만에 귀환한 제2남진회(1981년 5월 19일, 속초문화원 발간 '옛사건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세시 인용

#### # 남북어부에 대한 개인적 기억

내가 살던 동네는 속초시 고통 천주교회 옆 언덕에 있는 마을이다. 1970년대 속초의 다른 동네처럼 우리

회에서 탈락했다고 했다. 물론 다른 언고도 있었지만, 남북어부 가족은 신원 결격의 가장 많은 사유 중의 하나였다. 이렇듯 설악권 주민에게 남북어부문제는 분단과 냉전이 만들어낸 최악의 굴레였다.

#### ● 동해안 어선 피랍 일지

- ▲ 1967.11.9 거진정 덕집호 등 8척 47명 피랍
- ▲ 1968.4.29 평해호 피랍 - 11.7 거진정 금구호와 신명호 2척 11명 피랍
- 12.6 청송호 등 어선 5척 36명 피랍
- ▲ 1968.11.13 속초항 소속 용진호와 신명호 2척 12명 피랍 - 11.14 흥신호 6명 피랍
- ▲ 1968.4.7 덕진과 일 해상에서 어선 3척 43명 피랍
- ▲ 1968.12.27 11~12 월중 북괴경비원에 피로된 어선 3척의 어부 19명 귀환
- ▲ 1964.10.26 제 2경량호 거진정에서 조양호 피랍
- 11.29 제 7 경량호 15명 피랍, 같은해 12월 12일 귀환
- ▲ 1966.6.27 심동진제 5 신진호 남북 18 일만에 귀환
- 11.15 춘곡호 피랍 - 11.20 덕성호 피랍
- 11.20 북호항 명덕호 22명 피랍, 다음해 2월 8일 13명만 귀환
- 11.30 새영호 피랍, 다음해 5월 1일 영호 귀환
- ▲ 1968.1.26 양봉호(거진정), 동명호(거진정) 같은해 5월 1일 귀환
- 11.21 무연호 피랍, 다음해 2월 13일 귀환
- 11.29 북성호 6명 피랍 - 12.13 새영호 피랍
- ▲ 1967.1.19 해고경비정 56 북한 포격으로 격침 전사 39명, 중상 14명, 경상 6명
- 6.1 경부어협 소속 제 21 육령호(10명) 피랍, 같은해 9월 25일 귀환
- 6. 3 남북일 어선 제 3 용진호 귀환 - 6.15 부정 1호 9명 피랍, 같은해 12월 24일 귀환
- 6.17 부정 2호 9명 피랍, 같은해 12월 24일 7명만 귀환
- 6.27 천진호 24명 피랍, 같은해 12월 24일 23명만 귀환
- 9.20 대성호 해안포대 포격으로 선장 중상 피해

## 남북귀환어부 진실규명 시작 - 속초 고성

- 2008. 3. 19. **남북피해자 피해보상 설명회 속초와 고성 개최**
  - 속초 경실련 주최로 통일부 산하 남북피해자지원단 실무자 초청 설명회 개최.
  - 다수의 피해자가 처음으로 남북귀환사건 피해 사실 토로 (속초 고성 1백여명)





## 남북귀환어부 진실규명 시작 - 속초 고성

- 2009년 10월 속초경찰서 '남북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남북피해자 피해보상 신청 지원 (승해호 김성학, 풍성호 황원식, 만복호 김수성, 김무경 등 지원)
- 2009년 고성수협 장공순, 남북피해자 지원 신청서 접수지원
- 남북귀환어부 피해사례 언론보도 (조선일보 2009. 11. 17)

조선일보 제2148호

사람과 이야기

2009년 11월 17일 화요일 52면 A11

### 조국 돌아와 또 버림받은 남북자들의 짓밟힌 세월

1971년 8월 30일 새벽, 강원도 속초항을 출항해 오다가 조양호 나그네섬 승선하는 독도 부근에서 있었던 어부들 대치고 귀환 중이었다. 젊은 안개 낀 배를 세우고 잠시 뒤 새벽 1시가 넘어났다. 승해호 선장은 그 배에 "속초를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고 물었고 선장은 "속초 가려면 따라오라"고 했다. 승해호는 선배를 따라 잠시 이동하다 총소리로 함께 소문 경계령과 마주했다. 당시 해상은 한여름 구름 몇 개 걸린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자정을 갓 넘긴 때였다.

승해호 선원 2명은 그렇게 북한으로 끌려갔고 선원 중에는 16살 김공순 6살이도 있었다. 길게는 38년간 노동자 유배생활은 곳에서 28년간 조양호 교육을 받아야 했고, 다시 북한 인근 석양류개소에서 10개월간 체포 교육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하고 기다리던

에도 가서 돌아왔다. 이후 속초와 상해를 오가며 선원생활을 했지만, 주위 사람들이 배변관리를 할 때마다 감에도 할까 염려했다.

넷일을 그만두고 1986년 결혼해 속초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는 길에는

대부분 강원지역 어민들 간첩물려 감시·고문까지... 보상·지원 법 마련됐지만 '3년이상 납북' 소수만 해당 '인간·명예회복 차원 풀어야'

"학교가기 위해 어린 나이에 고기 잡으러 가 납북됐다" 돌아온 것이 60년으

했던 이근안에게 고문당했고, 후일 이 근 때문에 이근안이 가 장어 7년간을 신고했었다.

김재 역시 "대부분의 남북피해 어민들이 돌아온 것을 후회할 정도로 국가가 인권을 짓밟았다"며 "정신적 사외 생활은 평생 사생활도 빼앗겼던 아픔을 아예라도 치유해 주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난 남북 어부들은 '귀환·구원'이라는 인사 때문에 특이한 병무기록에 끌려갔고 사병에서 적위대 고문과 감시 속에 살았다. 이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 법률이 제정됐지만 납북 기간 3년 이상이라는 조건 탓에 납북자 10만 중 9명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어제는 납북자도 국민이라는 명분을 받고 있었다. 보상을 위한 신청 마감은 내년 10월 27일이다.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에서 하류한 선출정에서 만난 남북어부 장득필(69세)



왼쪽 집이름 하다 납북됐던 장득필씨가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에서 자신의 삶을 뒤바꾸어 높은 등재(대)를 바라보고 있다.



오른쪽 조양호 하다 납북됐던 김준성씨가 "북하면 불침초크"라는 것이 어울려 손수 법전을 사서 공부했다"며 법정을 돌아 보고 있다.

갔다. 남북 괴랑에서 북한군과 밀착을 하는 등 강연의 지휘했지만, 총부터 앞에선 수수무책이었다는 게 장득필의 회상이다.

한 달이 지난 1981년 12월 평壤 귀환할 때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실형을 살고 나왔다. 집 주위에 는 항상 정박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뒀고, 양부가 멀다 하고 불침초크 고문과 조야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은 공공근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장득: 2007년 4월 '군사정변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3년 이상 납북된 피해자에 대해 납북기간, 연명,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정착금과 가족 피애프로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제정 이후 정착금 8건 15억2000만원, 귀환하지 못

북자'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 기존에 상환금이 귀환 남북자들의 삶에 똑같이 영향을 미친 '3년'이라는 기준을 뒤 남북피해자로 인정받을 권리까지 박탈했다는 것이다.

전후 납북자는 3821명으로 이 중 3310명(86.6%)이 3년 이상 귀환했고 500명은 억류 중이다. 귀환 납북자 중 3271명은 선원으로 상당수가 속초와 고성 지역에 산다. 3년 이상 납북됐다

### 萬物相

#### 귀환 남북자들의 수난

1971년 납북됐던 김성학씨는 1985년 경기도경 대공본실에 체포돼 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조사 받았다. 발가락 사이에 전기막대를 끼우고 6번이나 강한 전기를 흘렸다. 그 충격으로 가슴을 결박했던 벨트가 끊기고 허리가 뒤로 쭈뼛었다. 수사관들이 후유증을 막는다며 진한 소금물을 먹였지만 척추는 망가졌다. 1980년 진도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석달윤씨는 전기고문, 물고문 말고도 요도(尿道)에 물건을 찔러 넣는 고문도 당했다고 증언했다.

▶1965년 북한 경비선이 어민 100여명을 납북했던 인천 강화군 미법도를 1970년대 말 이근안이 찾았다. 그는 주민 정영씨를 데려가 산속 소나무 밑에서 병 하나를 캐내 고 본 대로 증언하게 했다. 다른 주민 안장영씨가 간첩으로 몰렸다. 정씨도 1983년 체포됐고 아내까지 고문당하자 간첩죄를 인정했다. 수사관들은 조서에 "공작금으로 1000원짜리 한 다발을 받았다"고 썼다가 나중에 "당시엔 500원짜리 지폐밖에 없었다"고 바꿨다. ▶1967년 남북 어부 서창덕씨도 1984년 간첩죄로 잡혀 쇠막대기에 손과 발이 매달린 채 각목으로 맞은 끝에 거짓 자백했다. 서씨는 "국민학교도 못 나와 이름 석자 겨우 그리기 때문에 그들이 써온 서류에 지



장만 찍었다"고 했다. 그는 작년 10월 재신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지난 9월 10억원 국가 배상 판결도 받았다. 그는 "간첩 아버지를 둔 죄 없으며 나를 등졌던 아들과 재회하고 싶다"고 했다. ▶간첩 누명을 쓰지 않더라도 귀환 남북자들은 북한면 풀려가 조사를 받았고 이웃으로부터도 '간첩'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많은 납북 어부들이 보안법과 수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김성학씨는 "납북 어민들이 돌아온 것을 후회할 만큼 국가가 인권을 짓밟았다"고 했다. 1969년 납북됐던 어민 장득필씨는 "나만 당하면 괜찮을 것을, 자식들까지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취업도 못하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팠다"고 했다. ▶전후(戰後) 납북자 3821명 중 3318명이 귀환했고 이중 3271명이 선원이었다. 2007년 남북 피해자 보상·지원법이 만들어졌지만 3년 넘게 납북 억류된 피해자만 정착금과 위로금을 받게 돼 있어 단 8명만 보상을 받았다. 국가권익위가 9월 "3년 미만도 제대로 보상하라"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한다. 겪은 고초만큼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이들도 시대의 피해자라고 인정하는 명예 회복부터 해줘야 한다. 김홍진 논설위원 mailer@chosun.com

- 남북귀환어부 피해사례 언론보도 (조선일보 2009. 11. 17 만물상)  
"겪은 고초만큼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이들도 시대의 피해자라고 인정하는 명예회복부터 해줘야 한다."
- 피해자 순광호 선장 장득필은 고인이 되셨음. 피해사실 증언 14년 후인 올해 7월 4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음.

## 개별 재심 명예회복 (강원도)

-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없이 개별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진행 (2차 피해 사건)
  - 2012. 1. 5. 서울고등법원 남진호 안정호(고성)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무죄 판결.
  - 2013. 1. 8. 속초지원 송해호 김춘삼(속초)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무죄 판결.
  - 2014. 1. 10. 서울고등법원 대복호 김용태 재심 무죄 판결.
  - 2014. 2. 13. 대법원 박우용(고성 대진, 홍성 거주) 재심 무죄 판결.
  - 2014. 8. 21. 서울고등법원 대양호 김익순 등 4명(목호) 재심 무죄 판결.
  - 2015. 4. 6. 대법원 배일규(주문진) 재심 무죄 판결.
- 진실화해위 진실결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 이성국(속초), 윤질규(고성) 무죄 판결 받음.
- 2020년 2기 진실화해위원회 개시 후 지역에서 2차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다수가 진실규명을 신청했음. (송해호, 송운호, 창동호 이부, 1969년 동해안간첩단사건 피해자 등)

## 개별 재심 명예회복 (서해안)

- 태영호(추가)
  - 2017년 9월 박종옥 1인 **검찰 직권 재심 청구**
  - 2017.12.14. 전주지법 정읍지원 무죄 선고 판결.
- 군산 영창호
  - 2017.10.22. 군산 개야도 선적 영창호 남북어부 중 정삼근 등 4명 전주지법 재심 무죄 판결.
  - 2017. 10. 박춘환씨 등 3명 재심 무죄 선고.
  - 2017. 11. 24. 김용태 무죄로 8명 전원 명예회복.
- 군산 대덕호
  - 2006. 1. 선장 최만춘씨 가족 진실규명 신청
  - 2010. 1. 진실화해위 진실규명결정. 195일 불법구금과 허위자백 강요 확인.
  - 2012. 선원 6명 재심 무죄 선고.
  - 2017.9. 대덕호 어부 3명 **검찰 직권 재심 청구**
  - 2017.11.3. 대덕호 남북어부 고 한철승, 노순돌, 김근배 전주지법 재심 무죄판결.

## 개별 재심 명예회복 (서해안)

- 서천 신성호 복순호
  - 2015. 2. 고 최○옥 등 2명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 접수
  - 2017.1. 24. 재심 무죄 판결
  - 2022. 납북귀환어부 故 최○옥 가족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 군산 제5공진호
  - 2019. 7. 남정길 등 6명 재심 무죄 선고. 검찰 항소.
  - 2020.1.14. 6명 광주고법 무죄 선고.
  - 2022. 1. 23. 남정길씨 고무찬양 반공법 위반 재심 무죄. 2번째 무죄.
  - 2023. 7. 4. 공진호 선원 2명 검찰에서 직권 재심 청구.
- 군산 승룡호
  - 2018. 2. 22. 서창덕 등 5명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재심청구 기각 결정 (두번째 기각)
- 여수 동림호 탁성호
  - 2022년부터 동림호, 탁성호 재심 신청
  - 2023. 8. 31. 광주고법 재심 공판, 검찰 동림호 납북어부 신평옥에 대해 무죄구형 의사 밝혀.

## 2019 납북귀환어부 국회토론회

-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 2019. 6. 4. 국회의원회관 / 주최 국회의원 이재정
  - 속초에서 피해자와 가족, 시민 15명 참석.
  -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해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성과

- 남북귀환어부사건 진실규명 현황
  - 접수건수 242건 (신청 241, 직권조사 1건), 신청인원 254명, 규명 대상자(직권조사 포함) 1,042명
  - 진실규명건수 114건, 진실규명 인원 326명. (2023년 5월 25일 기준)
- 1기 진실화해위원회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17건 진실규명 결정. (직권조사 7건 포함)
- 2022. 2. 9. 강원 고성 건설호·풍성호 남북귀환어부 4명 진실규명 결정.
  - 2기 진실화해위 출범 후 첫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 2022. 2. 22. 남북귀환어부 982명 직권조사 결정. (109척, 1965년~1972년 귀환 10개 그룹)
- 2022. 10. 4. 전북 군산 남북귀환어부 송세근 반공법위반사건 진실규명 결정.
- 2022. 11. 29. 명천호(고성 거진항) 남북귀환어부 (신청자 2명)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 2022. 11. 29. 창성호(속초항) 남북귀환어부 (신청자 3명)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 2022. 11. 29. 남북귀환어부(故 최○옥) 가족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 2023. 2. 7. 대양호 등 1969. 5. 28. 고성 거진항 귀환 150명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직권조사)
- 2023. 5. 10. 승운호 등 1972. 9. 7. 속초항 귀환 160명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직권조사)
- 2023. 7. 4. 경인호 등 1967. 12. 26. 거진항 귀환 25명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신청조사)

##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성과

- 남북 어부들이 고의 또는 자진 월선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확인.
- 귀환 후 수사기관의 불법감금과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 확인. (재심사유)
  - 경찰 보고문서와 경찰 증언에서도 가혹행위, 물고문 사실 확인.
- 불법 감시 및 사찰 내용 확인
  - 남북귀환어부카드, 평가서, 귀환어부사찰 경과보고, 가족실태 조사보고서 등 인권침해 비밀문서 내용 확인.
- 남북귀환어부 인권탄압을 위한 비밀지침의 존재 확인
  - 남귀어부 시행요강 (어느 기관이 작성 시행했는지 미확인)
  - 남북귀환어부들을 국가기관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인권탄압을 진행했다는 증거자료.
  - 위해 등급 조정도 남귀어부 시행요강 제20조 5항 1호, 2호에 의거해 시행했다는 기록 확인.
- 남북귀환어부 인권탄압에 나선 국가기관 확인.
  - 남북귀환어부평가심사위원회 등급심사에 관할 경찰서장, 안전기획부담당관, 보안부대담당관, 경찰서 정보과장, 경찰서 대공과장, 경찰서 대공1계장 참여.
  - 국가안전기획부, 대검찰청 남북귀환어부 인권탄압 업무지시.
  - 검찰의 지시로 경찰이 남북귀환어부 가족실태 조사보고서 작성 보고.
  - 방첩대 또는 보안대 등 군 기관이 불법으로 남북귀환어부 감시 및 사찰, 추가 연행 조사 등 진행.

###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성과

- 납북귀환어부를 감시 통제만 한 것만이 아니라 대공 역용(逆用)공작에 동원하고 이용한 사례도 확인.
- 납북귀환어부 본인과 가족이 신원조회와 연좌제로 진학과 취업에서 좌절하는 피해를 겪었음을 확인.
- 30년 이상 불법 감시와 사찰 진행 확인.
  -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30년간 납북귀환어부 감시 및 사찰 진행
  - 1977년 강릉경찰서가 작성한 가족 실태 조사보고서에 1964년 납북피해자부터 기록.
- 과거사 정리법 개정으로 진실화해위 권고사항 이행 의무화 시행 (9월부터)
- 아직 국가기관의 사과는 전혀 없어, 당면 과제로 남아 있음.

### 982명 직권조사도 부족하다

- 진실규명 신청 접수 저조
  - 2년간 진실규명 신청 접수 241건 254명 접수.
  - 전체 피해자 규모에 비해 신청 저조. 피해자 사망 후 가족들이 피해사실 모르는 경우. 과거의 악몽으로 명예회복조차 기피하는 경우. **직권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
- 지난해 12월 9일 신청마감 후에도 진실규명 희망자 다수 확인.
  - 재심 진행과 손해배상 등이 진행되면 명예회복 희망자 더 늘어날 전망.
- 직권조사 대상 그룹 109척 982명 (10개 그룹)
  - 1965.12. 20. 치수호 등 6척, 42명 귀환 (신청 엄기우 등 6건 접수) / 동해안
  - 1968. 2. 28. 덕인호 등 5척, 35명 귀환 (신청 김수원 등 7건 접수) / 동해안
  - 1968. 3. 20. 성신호 등 8척, 44명 귀환 (신청 여규대 등 11건 접수) / 동해안
  - 1968. 3. 23. 신광호 등 9척, 65명 귀환 (신청 김우룡 등 7건 접수) / 동해안
  - 1968. 10. 30. 제5공진호 등 38척, 296명 귀환 (신청 남정길 등 3건 접수) / 서해안
  - 1968. 11. 1. 만복호 등 4척, 59명 귀환 (신청 김수성 등 12건 접수) / 동해안
  - 1969. 5. 28. 대양호 등 23척, 150명 귀환 (신청 김영곤 등 59건 접수) / 동해안 / **완료**
  - 1972. 5. 10. 협동호 등 5척, 42명 귀환 (신청 차치운 등 9건 접수) / 동·서해안(동해안 2척)
  - 1972. 9. 7. 승운호 등 7척, 156명 귀환 (신청 김팔용 등 48건 접수) / 동해안(여수 탁성호포함) / **완료**
  - 1972. 9. 15. 무진호 등 4척, 93명 귀환 (신청 손용구 등 14건 접수) / 동해안

## 982명 직권조사도 부족하다

- 직권조사 미포함 귀환 그룹 (1965년 이후 동해안 30명 이상 귀환그룹 4개 212명)
  - 1967. 12. 23. 묵호항 귀환 정진호, 제1부성, 제2부성호 3척 41명.
  - 1967. 12. 26. 거진항 귀환 경인호 등 11척 65명 귀환자 중 40명.
    - 2023.7.4. 25명만 진실규명 결정 (신청자가 있는 어선만 해당)
    - 1967. 11. 3. 13척 79명의 어부 납북. 동해안에서 1일 최고 납북자 발생, 무력 동반 납치로 사상자까지 발생.
  - 1968. 10. 31. 속초항 귀환자 4척 51명.
    - 동해안 신진호(5명), 신영호(5명), 금연호(17명), 덕수호(24명) 동아일보 보도
  - 1973. 8. 1. 속초항 귀환자 3척 80명. (1년간 북한 장기 억류)
    - 제3금성호(대진항) 27명, 제6일신호(포항) 28명, 제6미조호(부산항) 25명.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기간 한계
  - 내년 5월 26일까지 1, 042명(직권조사 포함) 진실규명 결정을 해도 전체 피해자의 30%가 안됨.

## 남북귀환어부 재심 경과 (동해안)

- 동해안 지역 남북귀환어부사건(1차 피해) 재심 경과 개괄
  - 재심 무죄판결 114명 (2023. 8. 31. 기준)
  - 법원별 무죄판결 속초지원 61명, 강릉지원 9명, 춘천지방법원 36명, 영덕지원 8명
  - 귀환날짜별 무죄판결
    - 1969. 5. 28. 60명 / 어선 다수 (진실결정)
    - 1972. 9. 7. 46명 / 승운호, 승해호, 해부호, 명성3호, 대북호 (진실결정)
    - 1972. 5. 10. 6명 / 창동호 (진실결정 없음)
    - 1972. 9. 15. 2명 / 무진호, 삼창호 (진실결정 없음)
  - 검찰 직권 재심청구 무죄 판결 36명 (속초 33명, 영덕 3명)
- 2020. 7.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창동호 고 김봉호 선장 등 4명, 재심 무죄 판결.
  - 2015. 3. 12. 재심 청구
  - 1, 2심에서 기각.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되어 2019년 재심 개시.
  - 남북귀환어부 1차 피해사건으로서는 동해안에서 처음으로 재심 무죄 판결 사례.
- 2021. 11. 11. 속초지원 창동호 선원 4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판결.
  - 재심 무죄와 국가 손해배상소송 승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
  - 지역에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신청과 재심 신청에 적극 나서는 동기를 제공.

### 납북귀환어부 재심 경과 (동해안)

- 2022. 8. 31. 속초지원 창동호 선원 고 장광남 재심 무죄 판결 (검찰 직권재심 청구).
- 2022. 11. 9. 속초지원 건설호 풍성호 납북귀환어부 3명 무죄 판결.
- 2022. 12. 21. 속초지원 건설호 5명, 풍성호 5명, 창동호 고 양재홍씨 총 11명 납북귀환어부 재심 무죄 판결 (검찰 직권재심 청구 10명).
- 2023. 1. 12. 강릉지원 무진호 선장 손용구, 삼창호 선원 김달수 재심 무죄 판결.
- 2023. 3. 31. 춘천지방법원 34명 납북귀환어부 재심 검찰 준비부족으로 공판 연기, 피해자와 시민 검찰 청 앞에서 기자회견 반발.
- 2023. 4. 12. 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 시민모임 (대표 김춘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직무유기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 2023. 4. 17. 강릉지원 대북호 김진용, 김용태씨 재심 무죄 판결.  
\* 2017.3.3. 김용태 재심 청구 / 2017.3.20. 김진용 재심 청구 / 2018.2.8. 재심 기각결정, 즉시항고 / 2022. 5. 30. 재심 개시 (강원도경 작성 문서 제출로 불법감금 사실 확인)
- 2023. 5. 12. 춘천지방법원 승운호, 승해호, 해부호 납북귀환어부 32명 재심 무죄 판결.

### 납북귀환어부 재심 경과 (동해안)

- 2023. 5. 17. 대검찰청 2023. 2. 7. 진실결정 납북귀환어부 100명 검찰직권재심 청구 착수 발표. (속초, 강릉, 춘천, 영덕, 대구)
- 2023. 6. 23. 춘천지방법원 명성3호 이성국, 승운호 고 정덕봉 3명 납북귀환어부 재심 무죄 판결.
- 2023. 6. 28. 속초지원 기성호 고 이신규 등 4명 재심 무죄 판결.
- 2023. 7. 5. 속초지원 수진호 고 황봉석 등 6명 재심 무죄 판결.
- 2023. 7. 7. 춘천지방법원 승해호 고 박정태 납북귀환어부 재심 무죄 판결.
- 2023. 7. 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영덕호 김영달 등 5명 무죄 판결.
- 2023. 7. 19 속초지원 영창호 김재문 1명 재심 무죄 판결 (부인 사망으로 선고기일 연기)
- 2023. 8. 9. 영덕지원 동일호 김종택 등 3명 무죄 판결 (검찰 재심청구 3명)
- 2023. 8. 18. 속초지원 대동호 김재수 등 8명 재심 무죄 판결
- 2023. 8. 21. 강릉지원 대양호 장천식 등 5명 재심 무죄 판결
- 2023. 8. 30. 속초지원 납북귀환어부 23명 재심 무죄 판결 (검찰 재심청구 22명)
- 2023. 9. 18. (예정) 속초지원 검찰직권 재심 청구사건 재심 공판

## 남북귀환어부 재심 경과 (동해안)



2023. 8. 21. 강릉지원 대양호 장천식 등 5명 재심 무죄 판결

## 강원지역 명예회복 진행 경과

- 2021. 6. 25.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강원민주재단)
  -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강원민주재단 주최로 “국가폭력의 상처와 치유-동해인 남북귀환어부 인권 유린·간첩조작사건” 토론회 개최.
  -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음.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다수 참석해 남북귀환어부 피해자와 사전 간담회 진행.
  - 진실화해위 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역언론과 정치권, 행정이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활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음.
- 2021. 7. 8. 속초시의회 유혜정의원 5분 발언, 남북귀환어부사건 피해자 지원 촉구.
- 2021. 7. 12. 고성군 남북귀환어부 진실규명 지원 회의 개최.
- 2021. 10. 27. 고성군 남북귀환어부 피해자(유족) 초청간담회 개최.  
고성군 행정 지원 추진. 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법률 제·개정 필요성 제기.
- 2021. 11. 26. 남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 포럼 개최.
  - 강원일보사와 강원민주재단 공동 주관.
  - 강원일보사 2021년 9월~11월 특별기획취재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집중 보도 남북귀환어부 사건 해결에 대한 강원도민의 공감대 형성에 큰 기여.

## 강원지역 명예회복 진행 경과

- 2021. 12. 10. 동해안 납북귀환어부피해 진실규명 시민모임 창립.
  - 속초시 근로자총합복지관에서 피해자와 가족, 일반시민 등 30명으로 단체 창립.
  - 대표 김춘삼 (1972년 9월 7일 귀환 피해 당사자)
  - 시민모임은 민간단체 차원에서 자발적인 진실규명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음.
- 2022. 1. 13. 진실규명 시민모임 피해자 재심 청구 설명회개최. (속초수협 회의실)
  - 2022년부터 지금까지 납북귀환어부 재심 청구 진행. (60여건)
  - 2023년 1월 12일 강릉지원 2명, 2023년 5월 12일 춘천지원 32명 납북귀환어부 재심 무죄 판결
- 2022. 2. 8. 진실화해위 2기 첫 인권침해사건 진실결정
  -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어부사건
- 2022. 2. 17. 강원도의회, 전국 최초로 납북귀환어부 지원조례 의결.
  -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강원도조례 제4840호, 2022.3.4. 제정. 전국 최초 납북귀환어부지원조례.
  - 주대하 강원도의원 대표 발의
  - 강원도의회, 조례 의결과 함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 및 특별기구 설치 등 요청.

## 강원지역 명예회복 진행 경과

- 2022. 2. 22. 진실화해위 납북귀환어부 982명 직권조사 결정.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을 2기 진실화해위 대표적인 인권침해 진실규명 과제로 선정.
  - 강원도내 민간단체와 언론, 행정, 정치권의 공동 노력으로 진실화해위의 대규모 직권조사 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함.
  - 과거사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모범 사례로 주목.
- 2022. 3. 2. 진실화해위와 강원도, 도내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간담회 개최. 도지사 사과 발언
  - 강원도청,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배석.
  - 최문순 강원도지사, 간담회에서 도청 책임자로서 피해자와 가족에서 사과한다고 발언.
  -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납북귀환어부 982명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 설명.
- 2022. 3. 2. 춘천지검 속초지청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실규명 협력TF' 구성.
  - 진실규명 시민모임의 요청에 따라 3월 23일 검찰 직권으로 창동호 고 장광남씨 재심 청구 (동해안 일대 납북귀환어부사건 검찰 직권재심 최초 사례), 8월 31일 속초지원 재심 무죄 선고.
  -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2022년 납북귀환어부 총 11명 직권 재심청구 무죄판결 이끌어 (창동호 2명, 건설호 5명, 풍성호 4명)

## 강원지역 명예회복 진행 경과

- 2022. 4. 6. **속초시의회 남북귀환어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의결.**
  - ‘속초시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유해정의원 대표 발의)
  -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940호, 2022.4.27. 제정.
- 202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남북귀환어부 법률지원단 구성 (진실규명 시민모임 요청)
- 2022. 5. 24. 진실규명 시민모임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 의원회관, 이은주 정의당 의원 주선)
- 2022. 6. **강원도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합동추진단 발족 및 활동 개시.**
  - 7월부터 속초에 추진단 현장 사무실 마련. 진실규명 신청 홍보 및 신청 지원사업 진행. (12월 10일까지 피해자 총 56명 발굴 및 지원)
  - 남북귀환어부 피해자 구술 인터뷰 및 자료집 발간.
  - 국회 심포지엄 개최 등 활동.
- 2022. 7. 18. **고성군의의회 남북귀환어부 지원 조례 의결.**
  - ‘고성군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의결.
  -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620호, 2022.8.2. 제정.
  - 고성군 남북귀환어부 진실규명 접수 홍보 독려, 읍면별 접수창구 운영.

## 강원지역 명예회복 진행 경과

- 2022. 11. 11.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피해지원 특별법안 제정 촉구 심포지엄 개최.**
  - 남북귀환어부 피해실태와 진실규명 작업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 제주 4.3사건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경위 공유.
  - 속초·고성 피해자와 강원민주재단 회원 등 30여명 참석.
- 2023. 2. 7. 진실화해위 150명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직권조사)
  - 1969. 5. 28. 고성 거진항 귀환 남북귀환어부
- 2023. 4.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합동추진단 속초사무소 활동 재개 및 강원민주재단 현장 지원 활동.
- 2023. 5. 10. 진실화해위 160명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직권조사)
  - 1972. 9. 7. 속초항 귀환 남북귀환어부
- 2023. 5. 17. **대검찰청 남북귀환어부 100명 검찰 직권 재심청구 착수 발표.**
  - 직권 재심청구 대상자는 2023. 2. 7.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에 근거 1969. 5. 28. 고성 거진항 귀환어부 (해당 검찰청 - 속초, 강릉, 춘천, 영덕, 대구)
- 2023. 6. 28.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 창립**
  - 장소 속초시청 /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 입법 추진활동 벌여 나가기로

## 강원지역 명예회복 진행 경과 (언론)

- 2021년 9월 ~ 11월 강원일보 창간 76주년 특별기획 '남북어부 간첩조작사건' 취재 보도
  -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 수상
- 2022년 12월, 2023년 1월 남북귀환어부사건 다큐 '해무' 방송
  - KBS춘천총국 제작 방송.
  - 2023. 9. 제50회 한국방송대상 지역다큐멘터리TV 부문 작품상 수상.
- 2021년 8월 ~ 현재. 설악신문 기획보도  
"남북귀환어부 진실규명이야기" 연재기획 보도 (엄경선, 총 32회)
- 강원도내 언론 모두 남북귀환어부사건을 지속적으로 보도
  - 지역내 문제해결 공감대 형성에 큰 역할을 해왔음.

## 자치단체 명예회복 지원사업

- 2022. 12. 12. 전남 남북귀환어부 실태 및 지원방안 정책토론회.
  - 전남도의회, 여수시의회 공동주관 /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 2022.12.21. 경북도의회 남북귀환어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결.
  - '경상북도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 (황재철 도의원 대표발의)
  - 경상북도조례 제4784호, 2023.1.2. 제정.
- 2023.4.14. 전남도의회 남북귀환어부 명예회복 지원조례 의결.
  - '전라남도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심의 의결 (주종섭 도의원 대표발의)
  - 전라남도조례 제5723호, 2023.4.27. 제정.
- 2023.5.29. 전북도의회 남북귀환어부 피해자 지원조례 의결.
  - '전라북도 남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 (강태성 도의원 대표발의).
  - 전라북도조례 제5278호 2023.6.16. 제정.

## 76세 노인의 14년 기다림...

- 14년 동안 명예회복을 기다리는 고성 아야진 김OO씨(76세)  
1967년 12월경 명태잡이배를 타고 납북, 한 달 정도 있다가 귀환했다. 다시 1968년 7월 10일 거진 만복호를 타고 오징어잡이를 나갔다가 납북, 6개월 억류 후 귀환했다. 선장과 선장 아들은 같은 배로 타고 나가 납북되어 선장 최서용(?)은 귀환하고, 아들 최승복(14세)는 돌아오지 못했다. 선장은 돌아와 구속,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귀환 후 고성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고 다시 서울 미군부대로 추정되는 곳으로 끌려갔다. 여기서 고춧가루 물 고문, 전기고문, 구타 등을 받았다. 양쪽 귀의 고막이 터져서 제대로 듣지 못해 더 심하게 구타와 고문을 받았다. 두번 납북되는 바람에 더 심하게 조사를 받았다. 돌아와 속초경찰서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았다.  
형을 살고 석방 후 집에서 3년 동안 누워있어야 했다. 치료비도 없어서 양쪽 고막을 치료하지 못했고, 항상 통증으로 고통을 당해야 했다. 당시 80kg였던 몸이 40kg로 줄어들었고 먹으면 모두 토하여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다. 지금도 신경안정제를 병원에서 타다 먹고 있으며, 온몸에 통증을 안고 살고 있다. (2009년 2월 엄경선 인터뷰)
- 2009. 2. 통일부에 납북피해자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신청했으나 기각.
- 2021. 12.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 현재 20개월 경과. 직권조사 대상.
- 앞으로 두번의 납북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야 함. 국가 손해배상까지는 얼마나 더 소요될지 알 수 없음.

##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나?

- 남북귀환어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시작된 지 17년 경과.  
- 2006년 12월 태영호 진실규명으로 시작.
- 현재 명예회복은 전체 피해자의 5%도 못 미쳐  
- 현재까지 전체 피해자 귀환어부 3,263명 중 145명 재심 무죄판결 확인.  
- 동해안 114명 추정 (8월말 현재)  
- 서해안 31명 추정 (태영호 6명, 영창호 8명, 대덕호 9명, 공진호 6명, 신성호 2명)
- 2기 진실결정 피해자 중 아직 한명도 손배상을 받지 못했다.  
- 올해 내로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 예상. 이 경우 진실결정 시점에서 20개월 이상 소요.
- 내년 5월로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 대통령이 1년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 5월로 2기 활동 종료.  
- 활동 종료 후 남북귀환어부사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여부 불투명.
-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남북귀환어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

## 특별법 제정 여건의 성숙

-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으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의 진실이 확인되었음.
- 납북귀환어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진실화해위 활동, 언론보도와 지역사회, 자치단체, 시민들의 노력.
-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일반화
  - 2017년 납북귀환어부사건에 대해 검찰의 직권재심이 일부 있었음.
  - 지난해에는 속초지검이 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 협력 TF를 구성하고, 직권 재심 청구를 진행.
  - 올해는 대검찰청에서 납북귀환어부 1백명에 대해 본격적인 직권재심 청구 진행 중.
  - 가해자인 국가기관이 나서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 과거사 해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고무적임.
  - 직권 재심 청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함.
- 4개의 광역자치단체(강원도, 경북, 전남, 전북), 2개의 기초자치단체(속초시, 고성군)에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섬.

## 특별법에 담은 내용

- 위원회의 설치
  - 진상규명과 재심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구제 절차를 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설치한다.
- 피해사실 조사와 직권 재심 권고
  - 위원회는 피해자 신청과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토록 한다.
- 진상조사
  - 위원회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해 개별사건을 포함한 납북귀환어부사건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련 국가기관이 숨김없이 자료를 보존, 제출토록 강제한다.
- 보상금 지급
  - 위원회는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자 신청에 따라 국가 지급 보상금을 심의해 결정한다. 이는 민사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소송 진행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막을 수 있다. 피해자도 보다 빠르고 쉽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다.

## 특별법에 담은 내용

- 피해자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급,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등
  - 고문과 가혹행위, 인권 침탈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치료, 치유를 위한 의료비와 생활지원금을 심사를 통해 결정 지급한다.
  - 남북귀환어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공익, 공공사업을 지원한다.
- 법적인 구제절차인 재심이 필요없고 빠른 합의가 가능한 소액 피해 보상의 경우, 소송 제기 없이 보상금에 합의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요율을 높게 책정한다. 다수의 소액 피해 보상을 활성화시켜 국가의 소송 부담도 줄이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 낸다.
- 남북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어리한계선 위반으로 반공법 탈출죄 처벌을 받은 피해자**도 피해대상으로 규정,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가능토록 한다.
- (검토 필요) 이미 부당한 국가폭력으로 확인된 남북귀환 1차피해사건은 **피해자 일괄 직권재심 청구**를 가능토록 법제화한다.



• 마산호 송환축구 쫓기대회 (속초, 대한뉴스, 1982)

우리가 믿었던 국가는  
 기다리던 어부들이 돌아오자  
 간첩으로 내몰았다.  
 그들은 우리의 아버지요, 남편이  
 고, 가족, 이웃이었다.

국가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감사합니다

MEMO ●●●

# 납북귀환어부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최 정 규 |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납북귀환어부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납북귀환어부사건"이란 "중전 후 동서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 북한지역에 들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를 처벌한 사건"이라고 한다
2.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5조에 따른 납북귀환어부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 가. 납북귀환어부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 나. 납북귀환어부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 다. 납북귀환어부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라. 납북귀환어부사건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 마. 납북귀환어부사건과 관련하여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 바. 납북귀환어부사건과 관련하여 나포, 조난, 표류 등을 당한 선박의 소유자·관리자·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
  - 사. 납북귀환어부사건과 관련하여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추징당하는 등 유·무형의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5조에 따른 남북귀환어부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피해자와 유족은 남북귀환어부사건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남북귀환어부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등

### 제5조(남북귀환어부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 ① 남북귀환어부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북어부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어부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2. 남북어부사건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구성에 관한 사항
  6. 남북어부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 사항
  7.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관한 사항
  9.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상임위원)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14(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7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7명으로 구성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 그 완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⑥ 위원회는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활동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불이익 처우 금지)

- ① 누구든지 납북귀환어부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 ② 피해자 및 그 유족은 납북귀환어부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3장 피해 신고 및 진상조사

#### 제8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납북귀환어부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신고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신고 후 절차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및 유족의 권리 등에 대하여 충실히 고지하여야 한다.
- ③ 피해신고와 신고처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정부 및 관계 기관·단체의 협조 의무)

- ① 정부는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 ② 관계 기관 및 단체는 남북귀환어부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사람,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 ⑤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남북귀환어부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1조(동행명령)

- ①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남북귀환어부사건의 진실에 관하여 중요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1. 대상자의 성명·주거. 다만,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3. 동행할 장소
  4. 동행명령장 발부연월일
  5. 동행명령장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6.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행한다.
  -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제12조(진상조사 결과 보고)

- ①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회합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장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

#### 제13조(피해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납북귀환어부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납북귀환어부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납북귀환어부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특별재심 및 직권재심청구의 권고)

- ① 피해자로서 납북귀환어부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권고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보상금)

- ① 국가는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보상금은 납북귀환어부의 납북기간, 형사절차 중 구금기간, 그 밖의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을 받는 유족은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른다.

## 제15조의 2(보상금의 신청)

-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간에 보상금을 신청·접수할 수 있는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처에 보상금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신청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생존여부, 피해자 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신청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보상금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 3(심의·의결, 결정서 송달)

제15조의 2에 따라 보상금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15조의 4(결정전치주의)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의 5(형사보상청구의 특례)

- ① 이 법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② 이 법에 정한 특례 이외에 형사보상청구 및 지급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다.

## 제16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 ① 정부는 피해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 제17조(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납북귀환어부사건 트라우마 치유사업)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에게 납북귀환어부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납북귀환어부사건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납북귀환어부사건 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피해자 및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사료관 건립
3. 납북귀환어부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4. 그 밖의 납북귀환어부사건 관련 기념사업

## 제6장 보칙

### 제2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결정, 제14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제15조에 따른 보상금, 제1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제21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결정,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진상조사,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희생자, 증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7장 벌칙

### 제24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받거나 이를 받게 한 사람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 ② 제22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MEMO ●●●